
사업인정 변경고시의 효력

1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최초 사업인가 당시 사업기간이 경과된 이후 변경고시를 하고 그 사업기간도 도과된 후, 별도 세목 고시를 통하여 건축물 (소규모 급수시설) 을 추가 고시한 경우 변경인가의 효력 유무와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적용 가능 여부 등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이미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타 공익사업으로 다시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종전에 공익사업 시행 유무 및 다시 수용하거나 사용할 특별한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효력 유무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2.28. 토지정책과-6681]